"존중과 신뢰,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북일교육"

북 일 고 등 학 교

http://www.bugil.hs.kr

북일고등학교 제 21-031 호	
담당부서	교무기획부
담 당 자	교무기획부
연 락 처	041-520-8620

FAX (041) 551-7116, (우) 311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

가 정 통 신 문

(관 인 생 략)

〖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및 공익신고 제도 안내〗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청렴한 북일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불법찬조금 근절 및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학부모님들께서 불법찬조금 근절 및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청렴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Ⅰ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

❍ 학년 초 학부모회 조직·운영에 따른 「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」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 운영

❍ 학부모 촌지, 불법찬조금, 향응 등 근절운동 참여(학부모 인식 개선)

❍ 촌지는 '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'을 의미하나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'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'에 해당하며 돈봉투, 상품권, 각종 티켓,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

※ 직무관련자(학부모)로부터 촌지(금품 등)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

❍ 불법 찬조금은 '초•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'.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

❍ **불법 찬조금 유형**

-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, 전화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**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·집행**

※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(스승의 날, 체육대회, 수학여행, 현장학습 등) 도시락·간식 등 지원, 자율학습 감독비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

- **학교운동부**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**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**

※ 코치인건비, 우승사례비, 명절휴가비, 감독체육교사 수당,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

❍ **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**

□ **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.**

- ○ **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.**
- ○ **소풍, 체험학습,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.**
- ○ **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.**
- ○ **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(기부금, 학부모회 임원 등)를 하지 않습니다.**
- ○ **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**
- ○ **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.**
- ○ **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**

Ⅱ 공익신고 제도 안내

❍ 신고주체: 모든 국민**(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)**

❍ 신고대상: 공익침해 행위

❍ 신고시기: 공익침해 행위가 **발생**하였거나 **발생할 우려**가 있을 때

❍ 신고기관: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, 세종시교육청 감사관 등

❍ 신고요건: 아래 내용을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

- 인적사항,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,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
❍ 신고자 비밀보장 : 비밀보장 의무,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

2021. 3. 26.

북 일 고 등 학 교 장